

제306회 임시회
2012. 1. 19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2012. 1. 19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정지숙 의원 외 6명
- 나. 발의일자 : 2012년 1월 3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1월 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1월 12일

(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생략)

가. 제안이유

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,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굴·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-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
-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 하도록 함.
-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청남대 등 도산하기관 시설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해 주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연병호)

금번 제정조례안은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각종 도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려는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지원·발굴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입장료 면제(제1항),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이용시 50% 할인(제2항), 청남대 등 도산하기관 시설의 입장료 면제(제3항)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안은 병역이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우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.
2. “3대 이상 가족”이란 조부 및 부·백부·숙부 그리고 본인,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(사망한 사람 포함)를 말한다.

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우대)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

④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